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

◇ 중·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Ⅰ 사업개요

□ **사 업 명** :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□ **추진근거**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◆ 「**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 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「**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**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**사업기간** : 2018년 1월~12월

□ **예 산 안** : 4,500백만원(도비)

○ 1차 사업 : 3,526백만원, 2018년 2월 교부 완료

○ 2차 사업 : 973백만원, 2018년 6월 수요조사 실시

□ **사업내용**

○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
○ 근로환경 개선사업 : 중·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

○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: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

○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사업수요조사	▶	현지실태조사	▶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	▶	지원대상사업 선정
수요파악 (시·군)		현장실사 (경기도)		협의회 심의 (경기도)		예산조정 (경기도)

□ **선정기준** : 사업분야별 심사표(붙임4)

□ **재원비율**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(도비10~50%)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□ **사업주체** : 시·군

II 사업별 지원기준

1 기반시설 개선사업

○ **지원대상** : 도내 소재 중·소기업 밀집지역

○ **지원내용** : 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보안등, 공동 안내 표지판, 우수관 정비, 공용 주차장, 보행로 정비, 교통신호등 설치 등

○ **재원비율** : 시·군 차등보조율[1] 적용(도비10~50%, 시·군비 50~90%)

○ **지원한도** : 개소 당 도비 200백만원 이내

○ **지원기준** :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, 시·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

○ **지원우대**

-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
-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가 완료된 사업
-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·군 사업
-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-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[2]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-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 (심사표 반영)

○ **제외대상**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(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)
-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
-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

---

1) 참고1. 2018년 시·군 차등보조율에 따름

2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2 근로환경 개선사업

○ **지원대상** :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
○ **지원내용**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, 휴게공간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신축,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

※ **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**

※ **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**
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《 **기숙사 신축** 지원 내용 》

- 지원대상 : 열악한 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신축 시 지원,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
- 제외대상 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군비 30% 자부담 40%)
- **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**

《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**통근버스 지원** 》

- 지원대상 :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(수혜기업 5개사 이상)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
(밀집된 기업 및 운영협의회에서 구성된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)
※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 '산업단지 통근버스운행 지정고시'를 득한 사업
- 제외대상 : 수혜기업이 5개사 미만인 경우
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군비 30% 자부담 40%)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○ **재원비율**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종업원 수[3]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3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○ **지원한도**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
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○ **지원요건**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(휴·폐업체 제외)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○ **지원우대**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·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[4]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[5],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○ **제외대상**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---

4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5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

3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

○ **지원대상**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
○ **지원내용** : 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,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등

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○ **재원비율**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○ **지원한도**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○ **지원요건**

-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-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 이상 사업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○ **제외대상**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4 작업환경 개선사업

○ **지원대상** :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(영세)기업 (제조업)

○ **지원내용** : 작업 공간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, LED조명 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, 지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)

○ **재원비율**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종업원 수[6]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○ **지원한도**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○ **지원요건**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○ **지원우대**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-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○ **제외대상**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- 사업 착수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---

6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Ⅲ 향후계획

- 2018년 7월 : 2018년 2차사업 현장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- 2018년 7월 : 2019년 사업 수요조사(시·군)
- 2018년 8월 : 2018년 2차사업 보조금 교부

참 고 **1. 2018년 시·군 차등보조율**

참 고	2018년 시·군 차등보조율

《2018년 시·군 차등보조율》

구 분		적용대상 시·군	보조율	
			도비	시·군
인하 보조	△20%	성남시, 용인시, 수원시, 화성시, 하남시, 고양시	10%	90%
	△10%	안산시, 시흥시, 김포시, 의왕시, 평택시, 군포시	20%	80%
기준보조(30%)		부천시, 파주시, 광주시, 안양시, 광명시, 구리시, 과천시	30%	70%
인상 보조	10%	남양주시, 이천시, 의정부시, 오산시, 양주시, 안성시, 가평군	40%	60%
	20%	동두천시, 포천시, 여주시, 양평군, 연천군	50%	50%

※ 경기도 예산담당관-14727(2017.07.30.)에 의한 도비보조사업 시·군 차등보조율